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2026년 기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15%)	경감(9%)	경감(6%)
30분 이상	17,450	2,618	1,571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9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1	2,047
120분 이상	43,430	6,515	3,909	2,606
150분 이상	50,640	7,596	4,558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2	3,421
210분 이상	63,530	9,530	5,718	3,812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5

○ 방문목욕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15%)	경감(9%)	경감(6%)
차량이용(차량 내)	88,990	13,349	8,009	5,339
차량이용(가정 내)	80,230	12,035	7,221	4,814
차량 미 이용	50,100	7,515	4,509	3,006

나.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행되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제시된 서비스 제공을 제외한 이용자의 추가적인 서비스 요구는 별 건의 계약으로 진행한다.